

#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용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7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이용균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 
박승진, 박영한, 서준오,  
왕정순, 이영실, 이원형,  
임만균, 정준호, 한·신,  
허·훈 의원(13명)

## 1. 제안이유

-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개정함(안 제13조).

## 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대차대조표”를 “재무상태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제13조(예산의 결산) 재단은 매 회 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 · <u>대차대조표</u> · 손익계산 서와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수 입 ·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3조(예산의 결산) ----- ----- ----- <u>재무상태표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#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조(예산의 결산)는 해당 조항의 용어를 변경(대차대조표→재무상태표)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계분석관	이홍래

☎ 02-2180-7952  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